

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	1996.	3.	1	조례 제 5호
개정	2000.	4.	6	조례 제 265호
	2005.	10.	5	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	2008.	5.	9	조례 제 943호(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	2022.	1.	6	조례 제225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5. 9, 2022. 1. 6>

제2조(비용) 증인이나 참고인(이하 “증인 등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(철도, 선박, 항공 및 자동차)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 1. 6>

1. 용인시의회 의원
2.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
3.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
4. 용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<개정 2005. 10. 5>

제4조(비용의 지급기준)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비용지급일수의 계산)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,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6조(비용지급의 제한)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

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
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4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2008. 5. 9 조례 제943호,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”을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④ 및 ⑤ 생략

부칙 <2022. 1. 6 조례 제2259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